

<201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고시,
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.

제2013 - 78호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>

고용보험법 시행령

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고시됨.

☞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(육아휴직 등 부여)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20만원이었으나, 월 10만원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)으로 변경됨.

☞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월 20만원(우선지원대상기업 월 40만원)이었으나, 월 30만원(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)으로 변경됨.

☞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,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

→ 본 핸드북(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)은 위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간되었으므로 직장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수정하신 후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⇒ 수정할 부분 : 100문 100답 중 64번, 65번 문답

<2014년 1월 14일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 개정 내용>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제3조(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☞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에는 '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'였는데, 2014년 1월 14일부터는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"로 확대되었습니다.

→ 본 핸드북(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)은 위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간되었으므로 직장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수정하신 후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⇒ 수정할 부분 : 100문 100답 중 20번, 37번, 55번, 56번 문답

<2014년 1월 21일 공포,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
법률 개정 내용>

근로기준법

제74조 변경됨.

부칙 <법률 제12325호, 2014.1.2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고용보험법

제75조, 제76조 변경됨.

☞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기간이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90일이었는데, 2014년 7월 1일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은 120일임.

⇒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인 경우에는 산후 연속하여 45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나, 출산전후휴가기간이 120일인 경우에는 산후 연속하여 60일 이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.

☞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의 경우, 출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인 경우에는 30일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이 120일인 경우에는 45일임.

→ 본 핸드북(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)은 위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발간되었습니다.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위 내용을 반영하여 본 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고용노동부, 2014년 1월 23일 "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" 발표>

☞ 2013년 12월 18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4년 1월 23일, 고용노동부 "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" 발표됨.

⇒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"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" 전문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workingmom.or.kr)알림마당 내 일반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운 받으실 수 있음.

→ 본 핸드북은 2013년 12월에 발간되었으므로 본 핸드북 200페이지에 수록된 것은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